

토론회

구금시설과
성소수자 / HIV감염인
인권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 최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회 진행]

사 회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	----------------------------

발 제	
14:05-14:50	구금시설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
	구금시설과 성소수자 '대구구치소 수감인 성소수자 A씨 사례'를 중심으로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지 정 토 론	
14:50-15:30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손문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지 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5:30-16:00	종합토론 발표자 및 청중 토론

[목 차]

발 제

- 구금시설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 / 3
|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
- 구금시설과 성소수자 ‘대구구치소 수감인 성소수자 A씨 사례’를 중심으로 /15
|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29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토 론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47
-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62
- 손문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63
- 지 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65

발 제 1

**구금시설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의**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

한겨레 21

2013년 김현의 수사관 출경 인터뷰
아프리카대지연의 '세 가지 구함'
개인음향과 금연의 필름이름

교도관은 나를
'에이즈'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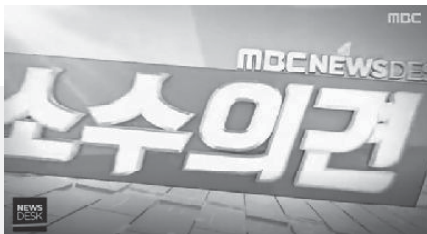
H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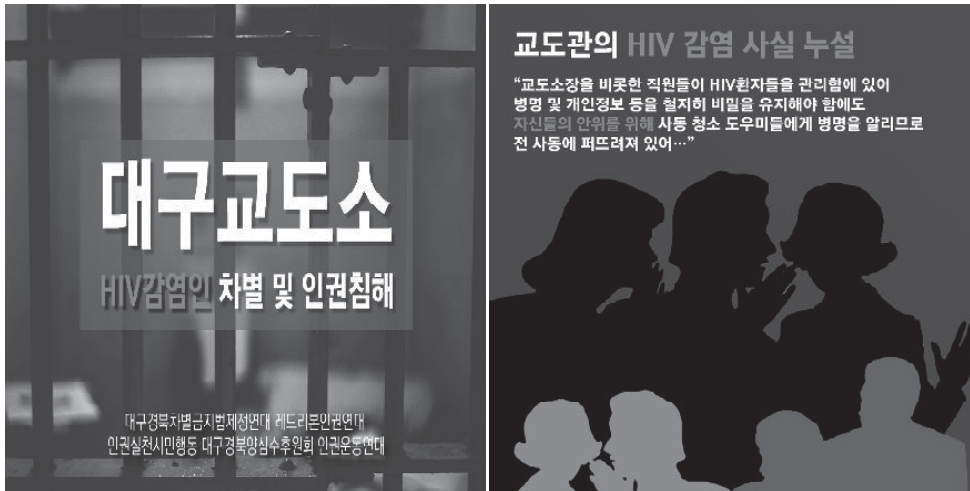
구금시설 HIV감염인에 대한 인
권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의 의의

레드리본인권연대
김 지 영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HIV감염인자조모임 해밀

피해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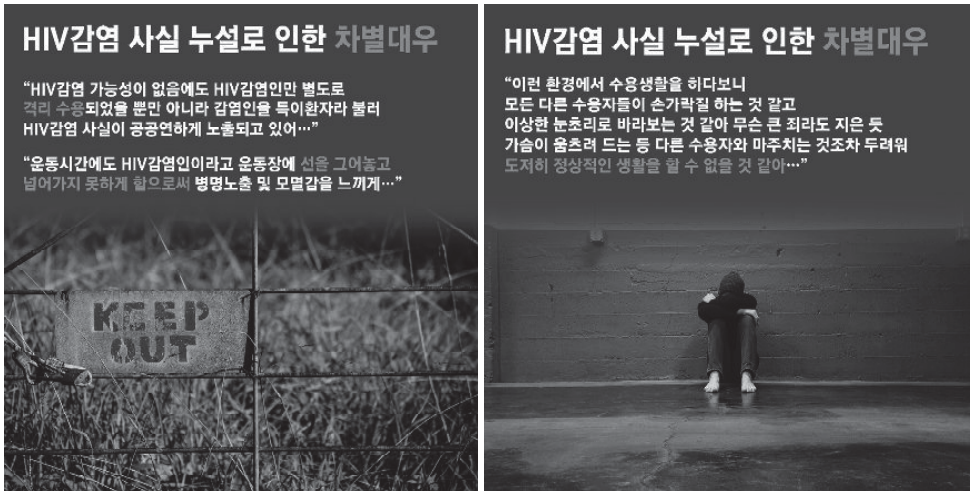
대구교도소

HIV감염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퀘드라르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성수추진회 인권운동연대

교도관의 HIV 감염 사실 누설

“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HIV환자들을 관리함에 있어 병명 및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동 형소 도우미들에게 병명을 알려므로 전 사동에 퍼뜨려져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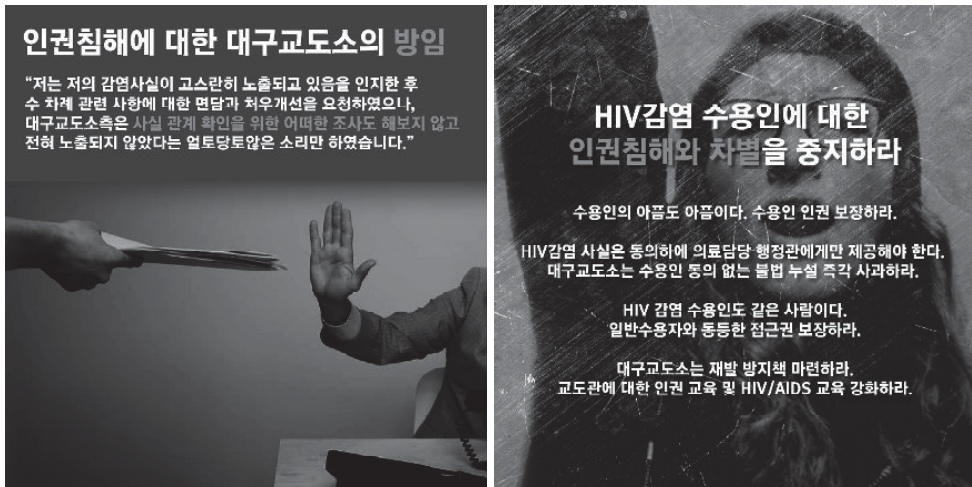
HIV감염 사실 누설로 인한 차별대우

“HIV감염 가능성이 없음에도 HIV감염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염인을 특이환자라 불러 HIV감염 사실이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어...”

“운동시간에도 HIV감염인이라고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병명노출 및 모멸감을 느끼게...”

HIV감염 사실 누설로 인한 차별대우

“이런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하다보니 모든 다른 수용자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 무슨 죄라도 지은 듯 가슴이 움츠러 드는 등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대구교도소&법무부 HIV감염 수용자 인권 침해 경과

- ▣ 2018. 11. 05 : 대구교도소 출소한 HIV 감염인 A, 인권운동연대 상담 진행
- ▣ 2018. 11. 16 : 대구교도소 출소한 HIV 감염인 A 인권침해 사실 서면 제출
- ▣ 2018. 11. 29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에 대한 레드리본인권연대 논의
- ▣ 2018. 12. 27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A 수용자 면회 진행
- ▣ 2019. 01. 18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 해결 위한 투쟁 결의 및 참가 단위 결정
- ▣ 2019. 01. 21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한 레드리본인권연대 2차 논의
- ▣ 2019. 01. 28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B 수용자 면회 진행
- ▣ 2019. 02. 14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 규탄 1차 기자회견 진행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 2019. 02. 14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 2019. 02. 14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A 수용자 연회 진행
- ▣ 2019. 02. 15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구지방교정청장 면담공문 접수

▣ 2019. 02. 15 : 법무부 정책브리핑 발표 <대구교도소 수용자 감염병 치료·인권보호에 최선>

▣ 2019. 02. 25 : 인권침해 사실 부정 거짓말쟁이 법무부&대구교도소 규탄 2차 기자회견

- ▣ 2019. 02. 25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A 수용자 연회 진행

▣ 2019. 03. 05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수용자 일회하는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거부

- ▣ 2019. 03. 15 : 국가인권위,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수용자 2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관계 조사
- ▣ 2019. 03. 16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A 수용자 연회 진행
- ▣ 2019. 03. 21 :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B 수용자 연회 진행

▣ 2019. 4. 12. 과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의 간담회

▣ 2019. 7. 17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구교도소 HIV감염인 인권침해 결정문 발표

▣ 2019. 11.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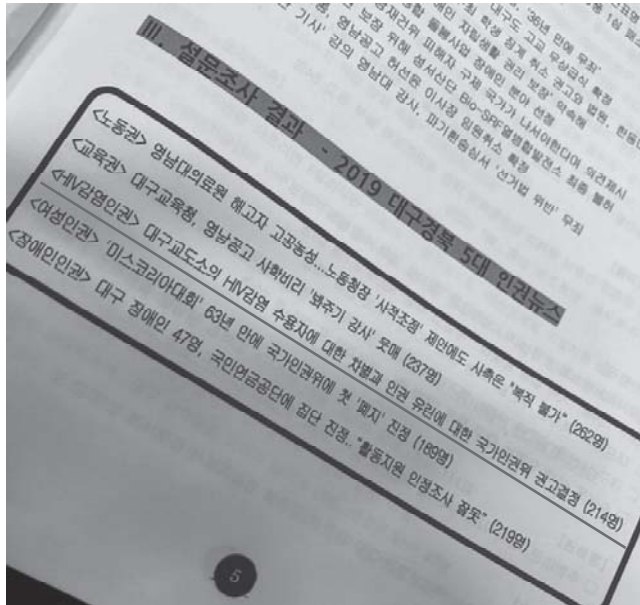
▣ 이후 매달 수용자 접견, 서신 및 영치금품 및 상담 지원



1차 기자회견 2.14 대구교도소앞 / 2차 기자회견 2.25 대구교정청앞 / 3차 기자회견 4.12 법무부 과천 정부청사 앞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선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9.2.14.

<진정인>

-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 김지영)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호)
- 피해자 A 손0영(대구교도소 수감 중) 수인번호 : 20**
- 피해자 B 김0화(대구교도소 수감 중) 수인번호 : 80*
- 피해자 C 조00(대구교도소 출소)
- 증인 배0한

진정의 요지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격리 수용한 행위, 사동 청소년(동료 수용자)들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키고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시를 해둔 점,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고, **함께 운동** 하는 경우에도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킨 점**, 이외에도 교도소 수감 중의 일체의 활동에서 HIV 감염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病歴)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 WHO 국제 기준에 의하면 HIV 감염 수용자의 권리가 의학적 요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넘어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격리에 대한 결정은 건강상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은 오로지 의료인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관리)에서도 감염인의 분리 수용은 의료관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용 생활 중에 감염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별도 격리하고, 병력정보를 노출하고 피해자들을 분리, 배제하였습니다.
-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IV 등 각종 감염 병 병력자의 정보는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에서 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유출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소되어 있는 동안 격리 수용은 물론, 병력 정보 노출, 일체의 활동에서 분리, 배제 시키는 조치를 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귀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정의 이유

1.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와 HIV 국제 인권 기준
2. 질병으로서의 HIV/AIDS의 성격
3. HIV/AIDS의 예방정책의 변화
4. 피해자의 격리 수용, 교화프로그램 참여의 분리, 배제한 차별 행위
5. 개인병력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행위

구금 시설내 HIV 감염인에 대한 기타 인권침해 유형

1. 입소·수용 생활 중 동의되지 않은 HIV 강제검사

-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7조(신입자 건강진단의 실시) 5항은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HIV 검진실시조차 고지되지 않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채혈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시도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임신 가능한 여성에게 동의 없이 임신테스트를 하거나 모든 수용자에게 HIV강제검사를 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2. 미흡한 비밀 보장 규정 (의료정보시스템 & 보람이 시스템)

- 고도 행정 시스템의 환자 정보 유지·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상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의 부재. 의료정보시스템이 고정정보시스템(보람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타 구금시설에서도 개인 수용자의 병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광범위하게 HIV 감염 수용자의 병력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3. 감염인 건강권 제한

- 혈액투석이 필요한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의료 접근 제한 조치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발간한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2010)에 의하면 “혈액매개감염검사에 있어 투석환자들이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HIV 예방과 관리를 위해 HIV에 감염된 환자를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리하거나 투석기계를 분리하거나 담당 의료인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투석기를 재사용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교도소의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차별 규탄

기자 회견

☐ 일시 : 2월 14일(목) 오전10시 ☐ 장소 : 대구교도소 앞

[기자회견문]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 유린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도 인해 HIV 감염인 A, B, C는 대구교도소 교도관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의 기본 인격 사항과 감염사실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출소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 그들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HIV 감염 사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는지 짐작도 되지 않을 정도이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속 조치를 요구를 법무부와 대구교도소에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비춘 결정의 의의_2019.7.17

1.가항 : 피해자 격리수용

- 사실상 분리 수용은 아니나, 부분적 격리수용으로 이는 손쉬운 교도행정을 목적으로 한 것임.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10조 인간존엄성을 침해

2. 나항 : 특이환자 표시 및 호명

-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3. 다항 :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 노출

- 감염병 예방법 74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위반 및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

4. 라항 : 운동 분리

- 헌법 10조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및 11조 평등권 침해

5. 마항 : 진정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미실시

- 기각

6. 바항 : 보라미시스템 개인정보노출

- 기각

아쉬운 지점

1. 입소·수용 생활 중 동의되지 않은 HIV 강제검사

-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7조(신입자 건강진단의 실시) 5항은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속히 관찰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HIV 검진사실조차 고지되지 않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채혈을 하거나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시도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임신 가능한 여성에게 동의 없이 임신테스트를 하거나 모든 수용자에게 HIV 강제검사를 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감염인 건강권 제한

- 혈액투석이 필요한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의료 접근 제한 조치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발간한 「투석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2010)에 의하면 “혈액매개감염검사에 있어 투석환자들이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HIV 예방과 관리를 위해 HIV에 감염된 환자를 다른 환자들로부터 격리하거나 투석기계를 분리하거나 담당 의료인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투석기를 재사용해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교도소내 HIV 감염인 차별 _진정인용결정환영 성명발표

수신	각 언론사 담당 부서
발신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담당	레드리본인권연대 김지영 aids5448@daum.net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제목	[성명]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 침해, 은폐와 왜곡으로 일축된 국가 공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
발송일	2019년 7월 17일 (수) 총 4매

[성명]

대구교도소 HIV 감염인 인권 침해, 은폐와 왜곡으로 일축된 국가 공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1월, 법무부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HIV감염 수용인은 교도관과 동료 수감인들에게 HIV감염 사실로 인해서 차별과 혐오과 일상이 된 지옥같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눈물로서 증언을 쏟아 놓았다. 감염인들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만연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던 대구교도소, 교정청, 법무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결혀 받아들이고, 다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 즉 혐오차별의 살인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교도소가 아닌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키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자 권리가기에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HIV 감염 수용인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요구할 것이다.

1. 개인 정보 보호 직원 교육 강화_특히, 수용자 개인 병력
2.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재점검 실시_담당자이외 접근권 부여 사례 여부 재점검
3. 처우변경시 의무관 의견 고려_다른 처우시 반드시 사전에 의무관 의견 고려 시행
4. 개인 병력에 의한 처우시 유의 표식부착 등으로 개인 병력 노출되지 않도록, 손톱깎이 등 공동사용시 해당물품에 병명 적시 않도록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19진정0116200)

법무부 교정본부

I 권고 내용

- 「각 교정기관에서 HIV산업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 권고

II 권고결정에 대한 의견

- 19진정0116200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수용」

III 권고이행 계획

- 「수용자 개인 병력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시」 시달

발 제 2

구금시설과 성소수자
‘대구구치소 수감인 성소수자 A씨 사례’ 를 중심으로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1. 대구구치소 수감인 성소수자 A씨, 인권침해 사실 경과

○ 4월 말

: A씨, 연행과정에서 성소수자(게이)라는 사실이 확인 됨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 2회 시도, 대구구치소 독거방 수감

○ 5월 2일

: A씨, 대구구치소로부터 독방수감 조치 후 독거방 수감에 대한 고립감과 폐쇄공포감, 심리적 위축으로 대구구치소측에 혼거방으로 전거해 줄 것을 요청
법무부 청와대 등 서신 40여 통에 이르는 독거방 고통을 호소

○ 5월 중

: A씨, 대구구치소로부터 HIV감염 검사 2회 감사 (음성판정)

○ 5월 29일

: 영남일보 모 기자 앞으로 서신 송달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수감에 대한 고통과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서신을 인권단체로 전해줄 것 요청

○ 6월 07일

: 인권운동연대, 영남일보 모 기사를 통해 A씨의 서신 확인 함

○ 6월 17일

: 인권운동연대,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A씨 1차 면회

○ 7월 04일

: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수감되어 있는 A씨 2차 면회

○ 7월 05일

: 대구지역 인권단체 공동으로 성소수자A씨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지방교정청 면담공문 접수

○ 7월 15일

: 성소수자A씨, 지방법원 1년 2월 선고

○ 7월 16일

: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등 수감되어 있는 A씨 3차 면회
대구지방교정청, 인권시민사회 면담거부 회신

○ 7월 22일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대구경북 프라이버시 침해사건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비공개 간담회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 7월 26일
: 성소수자A씨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인권단체 공동기자 회견
- 7월 31일
: 성소수자A씨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구치소 소장면담 서신 발송
- 8월 02일
: 성소수자A씨에 대한 자살시도 등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좀 더 협소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방 전거
성소수자A씨,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방 전거반대와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농성
- 8월 06일
: 성소수자A씨에 대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구지역 인권단체 대구구치소장 면담 진행
성소수자A씨에 단식 중지
- 8월 08일
: 대구구치소에 의한 성소수자A씨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 8월 22일
: 영국방송공사 BBC뉴스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가 수감되어 있는 A씨 면 회
- 12월 03일
: 수감인 A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하 접수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가 수감되어 있는 A씨 6차 면회
- 12월 04일
: 수감인 A씨, 밀양구치소로 이감
- 12월 06일
: 인권운동연대, 수감인 A씨 면회
- 12월 09일
: 밀양구치소에서 국가인권위원 조사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이유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평등세상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에 있어 교도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아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나마 사회적으로 차별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사회보다 그 피해자인 성소수자 수감인들은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 때문에 더욱 은폐되어지고 그 혐오와 차별은 더욱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 수용 중에 있는 성소수자 A수용인의 사례도 그러합니다.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성소수자 A수용인의 절박한 심경을 담은 서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신을 통해 전해진 성소수자 A수용자의 차별로 인한 고통과 울분은 고스란히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에게 실존을 건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거방 수용을 강요당하면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독거방 수용이라는 차별에 맞서 싸워왔고 성소수자 A수용인의 깊이를 모를 분노와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요?

성소수자를 차별로 혼거방에 외롭게 갇혀있는 성소수자 A수용인의 목소리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은 그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보장되어야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구치소를 비롯하여 교정행정은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소수자 A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선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정행정이 독거방에 수용생활로 인한 배제, 차별 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차별행위인 것입니다.

3. 진정의 요지

3-1. 대구구치소의 수용인과 성소수자 수용인에 대한 차별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거방 강요

성소수자 A씨가 독거방에 대한 동의하거나 요구가 없음에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구치소 수감 이후 현재까지 독방 수용생활을 강요

○ 자살시도 등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방 전거 독거방 수감에 대한 고립감과 폐쇄공포감,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면서 혼거방으로 전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8월 2일 성소수자 A씨를 감시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방 전거

3-2. 대구구치소의 성소수자 수용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권침해

○ A씨가 성소수자임을 교도관 등으로 통해 유포

대구구치소에서는 성소수자의 A씨가 혼거방으로 전거할 경우 혼거방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다른 수감자들이 성소수자의 A씨에 대해 혐오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뜻하지 않는 폭력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대구구치소내에 성소수자의 A씨가 성소수자임이 공공연히 유포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 대구구치소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반교도관 성소수자 A씨 성소수자임을 인지 대구구치소 내부 전산망을 통해 A씨의 수번을 검색하면 A씨 성소수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대구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인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지할 수 있음

○ 대구구치소 독거방에 수용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A씨에게 신경안정제 복용 강요

A씨가 독거방에서 혼거방으로 전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대구구치소와 교도관은 A씨에게 대동병원(정신병원)에서 지급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것을 수차례 강요

3-3. 법무부 훈령에 의한 성소수자 수용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이 성소수자 수용인에 대한 차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

① 소장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적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이하 “성소수 수용자”라 한다)는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성희롱, 성폭행 및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동·목욕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 등
2. 수용거실 앞 칸막이 설치 등 계호시설 보강
3.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

⑤ 소장은 성소수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하되,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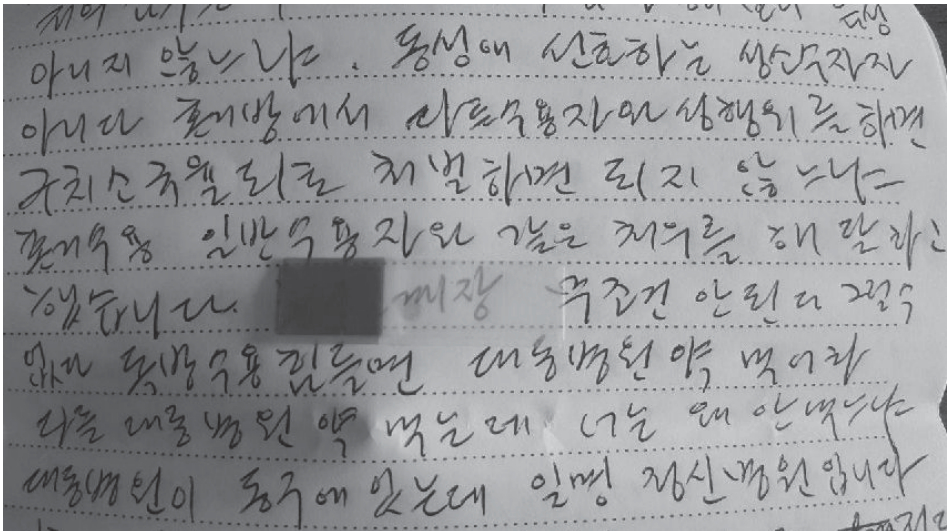
이는 대구구치소 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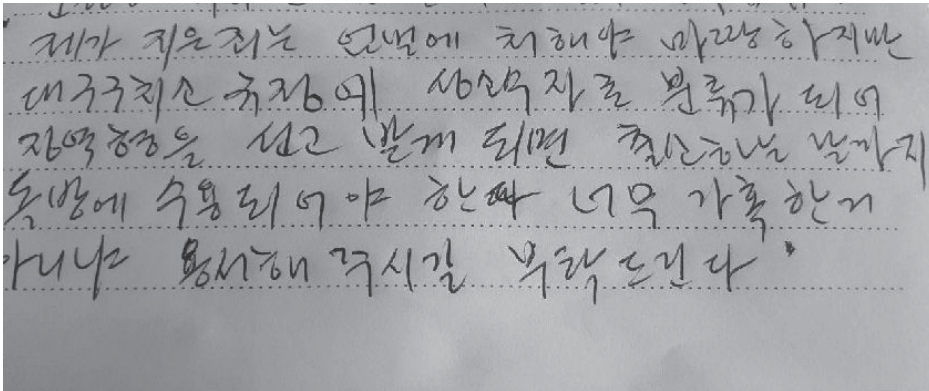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즉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혼거방 수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개개인의 상황과 개별적인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독거방과 혼거방에 대한 최대한 성소수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위의 법무부 훈령의 경우 독거방 수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성소수자의 차별이 될 수가 있음. 또한 성소수자만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라는 규정이 두발규정 등이 매우 자의적이고 교정행정이 강압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매우 많음. 이에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하는 지침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음. 결국 대구구치소 소장의 개별적 판단과 결정이 수용자의 독거/혼거 등 규정성이 매우 큰 것도 문제라 볼 수 있음

4. 성소수자 A씨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증언하는 서신 요지





5. 성소수자 A씨의 차별과 인권침해 근거 법률

5-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3. 계호상 독거수용의 성격과 재량권의 한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용거실지정은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해당함.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여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재량 처분이 됨.

○ 한편 시행령 제5조는 독거수용을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구분하고 있음.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하는 방식인 반면,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방식임. 계호상 독거수용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수용방식이므로,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처우상 독거수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호상 독거수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임.

○ 시행령 제5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계호상 독거수용 지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5-4.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계호상 독거수용의 문제점

○ 평등원칙 위반

수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계호상 독거수용 지정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한 처분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무관하며 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함.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2012년 유럽인권재판소도 터키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수용자를 독거수용한 처분에 대해 고문금지 및 비차별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CASE OF X v. TURKEY(Application no. 24626/09)]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39조 제3항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자 수용자의 성적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상정한 내용이며 수용자에게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수용될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성소수자를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님. 트랜스젠더 수용자라고 하여도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관계없이 의사에 반하는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위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교도소장은 현재의 계호상 독거수용이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그 해로움이 인정되는 경우 독거수용을 즉시 중단해야할 것임.

특히 2006년 법무부의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대책'은 '2000년부터 2006. 10. 9.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수용자 자살사고 75건을 분석한 결과, 자살사고 발생 장소는 징벌. 조사실을 포함한 독거실에서의 자살이 52명으로 69%'라고 분석하면서 자살위험 수용자 및 자살기도 전력자는 혼거수용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독거수용이 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여러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바, 교도소장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러한 건강상의 위험을 살피고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독거수용자가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가합8767 판결 [손해배상(기)])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첨부자료1_기자회견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의한 독거방 강제수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대구구치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프라이버시 침해 규탄
 -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한국사회에 은폐되고 구조화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규탄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규탄 발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반대와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결의
 - 김효원 영남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유니크
- 낭 독 :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주 최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의한 독거방 강제수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규탄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혐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낙인과 편견은 혐오와 차별의 태도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평등세상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소수자 A수용자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대구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성소수자 A씨가 동의하거나 요구가 없음에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구치소 수감 이후 현재까지 독거방 수용생활을 강요하고 있으며(면회를 통한 증언/서신) 교도관을 통해 대구구치소에 A씨가 성소수자임을 공공연히 유포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소수자 A수용자는 독거방 수감에 대한 고립감과 폐쇄공포감,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면서 혼거방으로 전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대구구치소는 8월2일 성소수자 A씨를 감시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있는 독거방으로 전거하고 자살시도 등을 감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에 성소수자 A씨는 독거방 수감을 반대하면서 8월2일부터 6일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6일, 성소수자 A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과 예방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측과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대구구치소는 완강히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 A 수용자가 독거방에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구구치소를 비롯하여 교정행정은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해야하며 차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소수자 A수용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정행정이 독거방에 수용생활로 인한 배제, 차별 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구치소 성소수자 A 수용자의 차별에 맞선 투쟁에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대구구치소와 법무부에 대한 사과, 성소수자라에 차별철폐라는 이름으로 승리 할 것입니다.

- 아 래 -

하나.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는 성소수자 A수용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사과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하라!

하나.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교정행정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대구구치소에 의한 성소수자 A수용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권고하라!

2019년 8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동



▲ 2019.07.26 기자회견 / 대구구치소 앞



▲ 2019.08.08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 앞

발 제 3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1. 들어가며

2018년 10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움을 바라는 한 글¹⁾이 올라왔다. 청원자의 동생이 약물투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동생은 트랜스젠더 여성임에도 남성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청원은 안타깝게도 1,297명의 참여로 종료가 되었고 현재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트랜스젠더 중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기형태를 기준으로 여/남의 성별이 정해지는 사회 속에서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은 여러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 그 중 특히 구금시설 수용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별에 따라 구분된 시설에 수용되고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 등에게 신체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인격권, 평등권의 침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정확한 숫자 및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의 청와대 청원과 같은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구금시설 내에서의 트랜스젠더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점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구금시설에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 인권침해 사례

가. 2010년 트랜스젠더 여성의 교도소 내 자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²⁾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의 부당한 처우로 자해를 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판결을 내렸다.³⁾

1) “제발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2018. 10. 1.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4584?page=4>

2)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2011. 4. 15. 참조.

3) 「트랜스젠더 수감중 자해 '국가 배상'...“심리불안 상태인데 가위 건네” 판결」, 『한겨레』 2011.1.4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이 사건의 당사자 A는 2004년 징역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A는 입소 당시부터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밝혔고, 입소 초기에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여성속옷을 차입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A는 당시의 법적인 성별에 따라 남성수용동에 수감되었고, 교도소측에 성전환수술, 호르몬요법 등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교도소측에서는 다른 수용자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여성속옷 사용도 불허했으며 다른 수용자에게 A와의 상담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A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었고 급기야는 교도관에게 가위를 받아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자해를 하기까지 했다.⁴⁾ 이후 2009년 출소한 A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도관이 가위를 A에게 넘겨 자해를 하도록 한 과실을 인정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다만 그 외의 교도소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는 아쉬운 판결을 내렸다.

나. 2014년 이발을 거부한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징벌 사건⁵⁾

2014년 광주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에 긴 머리를 자를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징벌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의 당사자 B는 평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이 위생을 이유로 이발을 할 것을 지시했고 B가 이를 거부하자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B는 조사기관을 포함 총 21일을 징벌방에 수용되어야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함께 B는 부당한 징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형집행법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해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행형법과

4) 해당 사건은 영화 ‘하프’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 영화는 당사자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무력하고 불쌍한 존재로 그린다는 점에서 서사적 한계를 담고 있다.

5) 자세한 내용은 SOGI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5. 17. 48-49쪽 참조.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같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발을 길게 기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교도소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거부, 처우상 차별 사건

2019. 3. 20.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가 구치소 수용 시 호르몬요법 등 의료적 조치를 거부당하고 원치 않게 여성수용동에 수감된 것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구치소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하였다.⁶⁾

이 사건의 진정인 C는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구치소 입소 당시 유방절제, 자궁적출 등 외과수술을 받고 안드로겐 등 호르몬을 투여받아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까지 법적 성별정정은 하지 못하여 법적 성별은 여성으로 남아 있었다. C는 구치소 입소 당시 이러한 사정들을 구치소장 및 담당자에 알렸으나 신체검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들었고, 구치소 측은 C와의 별다른 상담 없이 C를 여성수용동에 수감하였다. 또한 C가 이전부터 받던 호르몬요법을 계속 받기를 원했으나 구치소 측은 진단서와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의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 이에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정취지 중 신체검사시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리고 의료적 조치의 거부에 대해서는 호르몬요법은 트랜스젠더에게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임에도 구치소 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호르몬요법을 거부한 것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규정상으로는 진정인을 남성수용동에 수감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상담과 처우 상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

6) 국가인권위원회 2019.3.20.자 17진정0726700 결정.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

위 사건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구금시설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겪는 어려움은 ①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수용동 수감되는 문제 ②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 ③ 의복, 두발, 영치품 등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 ④ 교도관들의 몰이해로 아우팅, 괴롭힘 등을 당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수용자 전반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맞춘 개별적이고 상제한 대응 역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형집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제정된 「수용업무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구금시설의 책임자가 성소수자 수용자를 전문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고,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제19조는 유치인보호관으로 하여금 유치장 내에서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⁷⁾

7) 한편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1호)는 제2조 제4호에서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적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제76조)”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80조 제4항)”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제명이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바뀌면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수용업무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1211호)

제39조(성소수자 처우) ① 소장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이하 “성소수 수용자”라 한다)는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성희롱, 성폭행 및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동·목욕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 등
2. 수용거실 앞 칸막이 설치 등 계호시설 보강
3.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

⑤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하되,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된 것은 2018년 전까지는 「수용관리업무지침」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을 실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위 지침 역시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할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위 규정의 많은 부분의 재량 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만을 통해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4.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해외 사례

위와 같이 현재 한국의 행형 관련 제도가 원칙적 지침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유럽, 미국 등에서는 개별적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중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몰타

몰타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법과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⁸⁾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6. 8. 몰타는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및 인터섹스 수용자 정책(Trans, Gender Variant & Intersex Inmates Policy)」⁹⁾을 마련하여,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몰타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및 인터섹스 수용자 정책」

(1) 기본 원칙

교정 서비스는 인권과 수용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해당 정책은 존엄과 자기결정권, 공정함, 사회정의, 다양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2) 교정시설 입소 및 배치

교도소 규정에 따라 교도소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 수용된다. 제공되는 수용시설은 공문서 상의 성별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반영해야 한다. 수용

8) 유럽의 성소수자단체 일가 유럽(ILGA Europe)은 매년 유럽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를 평가하여 ILGA-Europe Rainbo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에서 몰타는 94.0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https://rainbow-europe.org/country-ranking> 참조.

9) *Trans, Gender Variant & Intersex Inmates Policy*, Ministry for Home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of Malta, 2016. 8.

<https://homeaffairs.gov.mt/en/media/Policies-Documents/Pages/-Trans-Gender-Variant-Intersex-Inmates-Policy.aspx>

자의 성별정체성 등으로 인한 독거수용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격리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남성 수용동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안전상의 우려로 여성 수용동에 배치되기를 희망한다면 관리자의 자문과 결정을 거쳐야 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여성 수용동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적 가해자로 간주되거나 다른 수용자와의 소통을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3) 신체수색

신체수색은 생물학적인 성징이 아닌 성별 표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인터섹스 수용자에 대한 수색을 수행하길 어려워하는 교도관에 대해서는 다양성, 성별정체성, 평등의무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 수용자 처우

수용자가 스스로 선언한 이름, 호칭, 대명사는 당사자의 법적 성별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이름 등이 영장에 기록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름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적 기록에 반영해야 하고 교도관은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목욕 및 옷을 갈아입는데 있어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인터섹스 수용자의 안전과 사생활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시설에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인터섹스 수용자는 어떠한 수용시설에 배치되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성별정체성 등에 따라 의복, 속옷, 화장품, 면도용품 등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성별 특징적인 물건들을 제공받는 것은 결코 '특별한 취급'이 아니며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한 형태일 뿐이다.

(5) 의료적 조치 제공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인터섹스 수용자는 성별정체성 등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자가 수용 전에 받던 호르몬 요법은 교도소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소 내에서 호르몬, 제모, 음성교정, 수술 등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경우, 구금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의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은 법적 성별에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6) 직원 훈련

교정 책임자는 모든 직원들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에 의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 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영국

영국은 2011. 3.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 정책¹⁰⁾을 마련하여, 트랜스젠더,

10) 해당 정책은 2016. 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gender Offenders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9. 1. 한 차례 더 개정되었다.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Agency Board, *Prison Service Instructions: 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gender Offenders*, (Ministry of Justice (UK), PSI 17/2016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psis/prison-service-instructions-2016>)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인터섹스, 젠더비순응 수용자에 대한 입소 및 배치, 전반적 처우, 의료적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 정책

(7) 기본 목표

해당 정책은 모든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공평하고 관대하며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교정시설 입소 및 배치

교도소 규칙 12(1)는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분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법적인 성별에 따라 배치된다.

만일 수용자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이고 법적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면 3일 내로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Transgender Case Board)가 소집되고, 관련된 증거들을 고려해서 수용자의 배치가 정해진다. 만일 수용자가 성별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는 완전한 증거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자신이 인지한 성별에 맞게 수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수술여부, 성별정체성에 따른 생활, 개명 여부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수용자의 배치가 정해진다.

성별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여성 수용동에 배치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배치를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의 정도는 다른 여성 수용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측정해야 한다. 만일 배치가 거절된 경우 해당 수용자는 남성 수용동 내 여성 수용자가 되며, 여성 수용자 지침에 따라 독거 수용

되어야 한다.

성별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는 보안상의 위험이 없으므로 남성 수용동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만일 수용자가 자신이 비이분법적 성별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인터섹스, 복장전환자이고 영구적으로 다른 성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경우라면, 해당 수용자에 대한 배치, 처우는 법적 성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신체수색

수용자가 성별변경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변경하려는 성별에 맞게 신체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수용자가 성별변경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나 다른 관리자와 상담을 거쳐 신체수색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한다. 수용자가 성별을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다른 성별로 살기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체수색, 검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0) 수용자 처우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영구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의복, 관련된 물품(보철물, 브래지어 등)들을 제공받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만일 위 아이템들이 보안상 위험이 있어 금지되어야 한다면 이는 반드시 고위관리자나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격리를 하는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교정시설은 가능한 한 수용자에게 힘이 되는 알맞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보호격리하는 경우 7일 내에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에 이첩해야 한다.

(11) 의료적 조치 제공

교정시설은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구금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담, 수술 전 및 수술 후 치료, 지속적인 호르몬요법이 포함된다.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수용되기 이전에 성별위화감 진단을 받아 의료적 조치를 받았고 수용 중에도 이를 희망한다면, 교정시설 내 의료진이 합리적인 임상적 근거에 의해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12) 직원 훈련

이 정책에 대한 훈련, 지침과 의식화 교재가 범죄 관리국의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고 전 보고서 작성인, 구금접수직원, 범죄관리인, 보호구금 사무원들을 위한 특별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다. 미국

미국의 경우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전 지역에 적용되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 정책과 이를 보충하는 개별 주들의 정책이 각각 존재한다.

1) 연방정부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먼저 연방정부의 경우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교정 시설 내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규정인 「교도소 및 구치소 기준(Prison and Jail Standard)」¹¹⁾가 있다. 이 규칙은 2003년 제정된 「교도소 강간 근절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에 따라 미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규칙으로, 교정 시설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폭력 위험에 특히 노출된 집단¹²⁾이기에 교정시설 내 배치, 신체수색, 직원 교육 등의 상세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 「교도소 및 구치소 기준」

(13) 교정시설 입소 및 배치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수용자를 남성 또는 여성 시설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처우를 제공함에 있어,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 보안상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최소 2년에 한번 씩 재검토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수용자가 자신의 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표명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4) 신체수색

교도소는 단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수용자의 성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체수색,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수용자의 성기상

11) Ministry of Justic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NATIONAL STANDARDS - PRISONS & JAILS*, Docket No. OAG-131, RIN 1105-AB34, May 17, 2012

12) Michell L., & Christina, *Protection for Transgender Inmates Under PREA: a Comparison of State Correctional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2018, 1p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태가 불분명하다면 의료기록 검토 내지는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검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15) 직원 훈련

교정기관은 수용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소수자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위 기준은 의료적 처우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산하 연방교도소 관리국(The Federal Bureau of Prison)의 기존 지침은 교정 시설에 수용된 경우 의료적 조치를 중단하는 ‘현상태 유지(freeze-frame)’였다. 그러나 2006년 위스콘신 주 연방지방법원은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있음에도 교도관이 의료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주법에 위반된다는 결정¹³⁾을 내렸고 이후로도 이런 결정¹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12년 연방교도소 관리국은 지침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호르몬 또는 기타 필수적 의료적 조치는 시설 내 의료 인력의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때 의료인력은 정신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¹⁵⁾하고 있다.

2) 주정부

주정부의 경우 우선 연방정부의 「교도소 및 구치소 기준」은 미국 내 전 지역의 교정시설에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적 조치의 제공이나 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는 주에 따라 개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의 조사¹⁶⁾에 따르면 50개의

13) Fields v. Smith, 653 F.3d(550) (7th Cir, 2011).

14) Adams v. Federal Bureau of Prisons, No. 09-10272 (D. Mass. June 7, 2010)

15)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Prisons, *Transgender Offender Manual*, 5200.04 CN-1, May 11, 2018

16) Douglas et al., *Transgender Inmate in Prisons: A Review of Applicable Statues*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뉴욕, 뉴햄프셔를 포함한 21개 주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수용 전에 받던 호르몬요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3개 주는 수용 이후 호르몬 요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호주

호주의 경우 각 주마다 트랜스젠더 정책을 두고 있어 그 규율내용도 주마다 다르다. 2017년을 기준으로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 중,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 수도 준주가 관련 정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¹⁷⁾

이중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경우 유일하게 「교정관리법(Correction Management Act 2007)」이라는 법률¹⁸⁾로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배치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주 수도준주 「교정관리법」

79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수용자 - 성정체성

- (1) 이 장은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 수용자에게 적용된다.
- (2) 이 법에 있어, 수용자의 성별은 다음에 따라 정해진다.
 - (a) 아래 (3)조에 따른 성별; 또는
 - (b) 만일 (4)조가 적용된다면, (4)조에 따라 승인된 성별
- (3) 교정시설 입소 시에

and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 61(6), 2017, pp645-666.

17) Sam Lynch; Lorana Bartels, *Transgender Prisoner in Australia: An Examination of the Issue, Law and Policy*, 19 Flinders L. J. 185, 2017, pp185-231.

18) Corrections Management Act 2007(ACT), last amendment made by A2018-9, 26 April 2018.

<https://www.legislation.act.gov.au/a/2007-15>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 (a)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정한 성별을 알리거나
 - (b) 수용자가 성별을 정하는 것을 실패(거절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교정시설의 장이 아래 (5)조의 보고서에 따라 수용자의 성별을 정할 수 있다.
 - (4)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아래 (5)의 보고서에 따라 수용자가 정해진 성별을 변경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5) 위 (3) 내지 (4)조의 결정 시, 교정시설의 장은 22장에 따라 임명된 의사로부터 수용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 (6) 교정시설의 장은 반드시
 - (a) 수용자에게 (3) 내지 (4)조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하고
 - (c) 수용자가 이 장에 따라 정해진 성별이 입소 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이 장의 효력의 예시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 시설배치 및 위생시설 이용 등은 수용자의 정해진 성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인 정책을 두고 있는 주들 중 좋은 사례로 뽑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책¹⁹⁾은 위 몰타, 영국과 유사하게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용, 신체수색, 처우, 의료적 조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마. 그 외 국가들

프랑스의 경우, 구금장소에 대한 총감독관(General Supervisor of place of detention)이 2010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양질의 지속적인 치료를 다른 사람과

19) NSW Government, Custodial Operation Policy and Procedure - 3.8 Transgender and Intersex Inmates, - version 10 <https://www.correctiveservices.justice.nsw.gov.au/Documents/copp/transgender-and-intersex-inmates-redacted.pdf>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동등하게 수용자에게 보장'하는 「2009 교정법」 제46조가 트랜스젠더 수용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²⁰⁾

캐나다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과 같이 수용 중에 호르몬요법 등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였으나 2001 캐나다 인권재판소가 성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캐나다 교정국이 비용을 부담한다.²¹⁾

일본의 경우 현재 트랜스젠더 수용자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5년 법무성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 호적상 성별이 남성이어도 입욕, 신체검사 등에서 여성으로 대우할 것을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통달하였다.²²⁾

5. 마치며 : 트랜스젠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범죄혐의가 있거나(유치장, 구치소) 또는 혐의가 확정된(교도소) 경우 수용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책임비례원칙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집행과 구금의 목적을 위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제한 외에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1헌마16결정).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존재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는 구금시설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수용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이는 곧 구금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구금시설에 수용된 트랜스젠더들이 신체의 자유 제한과 인격권의

20) TGEU, Coiming Out, ILGA-Euroup, EPATH, *Written Comments submitted jointly for Bogdanova v. Russi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 2015, p5.

21) 위 보고서, p6.

22) 産経ニュース, "L G B Tに厳しい塀の向こう側 個々の事情に対応進まぬ拘置所・刑務所", 2016. 1. 3.

<https://www.sankei.com/premium/news/160103/prm1601030029-n2.html>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침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①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의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형집행법에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겪는 구체적 상황(신체수색, 수용, 생활상 처우, 의료)에 맞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구금시설 직원 및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국제인권기준, 평등원칙 등에 관련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토 론 1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이번 토론회의 계기가 된 최근 사건의 성소수자·HIV감염인 수용자와 관련된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은 다른 토론자께서 다루실 것으로 압. 저는 행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정도를 각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더불어 저는, 위 사건이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수용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및 병력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 행형개혁에서 늘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고 있는 ‘독거수용 원칙의 관철’을 한 해결책으로 제안드리고자 함.

1. 행형의 목적 : 재사회화

○ 구금의 목적은 수형자의 경우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미결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방지로 한정).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는 수형자 개인에게 적절한 영향을 미쳐 향후 재범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수형자가 석방 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도록 하고 있음(형집행법 제55조). 이러한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정시설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再社會化)에 있는바,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이 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¹⁾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임.

○ 재사회화를 행형의 목적으로 둔다는 것은 행형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보는 관점이나 범죄를 질병으로 보고 수형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관점이 재범방지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것.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함. 바꿔 말하면 교정당국은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임. 예를 들어 현재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됨. 그러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교정시설이 여전히 ‘범죄의 학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고 있고 동시에 교정시설이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임.

1) 유사성의 원칙

○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에서의 처우 등 생활 조건이 시설 밖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유사성의 원칙). 교정시설의 환경이 시설 밖의 환경과 큰 차이가 있다면,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자유의 박탈은 그 자체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자유 박탈 이외의 수형자 처우는 가능한 한 시설 밖과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5조 제1항도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집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처우로는 △자비구매(제24조) △운동 및 목욕(제33조) △건강검진(제34조) △치료와 진료(제36조 내지 제40조) △접견(제41조) △서신수수(제43조) △전화통화(제44조) △종교행사 참석과 신앙생활 관련 서적과 물품의 소지(제45조) △도서의 비치(제46조)와 신문·잡지·도서의 구독(제47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제48조) △집필(제49조) △봉사활동과 견학(제57조)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제63조) △외부 통근 작업(제68조) △가족만남의 날·가족만남의 집(시행규칙 제89조) 등이 있음. 그 외에도 작업과 직업훈련 등 수형자 처우의 대부분이 유사성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처우가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추상적인 예외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임.

○ 최근 사건도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교정시설 외부에 있었을 때 보장받았을 사회적 처우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보장받고 있는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음.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교정시설 외부에서라면 스스로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환경(수용실의 배정, 목욕, 실외운동, 작업, 화장실 사용 등 공동생활 전반)이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유사하게 보장되는지 △HIV감염인이 교정시설 외부에서 받았던 의료처우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보장 받고 있는지 △에이즈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해당 의무는 HIV감염인의 병력이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발생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병력 누설 가능성이 더 크고 발생하는 해악의 강도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이겠음.

2) 구금 부작용 해소의 원칙

○ 이러한 유사성의 원칙은 자유박탈형이 가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구금 부작용 해소의 원칙).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구금 자체가 주는 고통 외 부가되는 다른 고통, 예를 들어 법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좌절감이나 다른 수형자와의 공동생활에 따른 마찰, 또 다른 범죄로의 유인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할 것임. 이는 재사회화와 관계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재사회화를 해치기 때문임. 넬슨만델라규칙 제3조가 “구금행위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 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집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처우로는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의 분리수용(제13조) △독거수용 원칙(제14조) △죄명 등에 따른 수용거실 지정(제15조) 등이 있음. 한편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인과 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처우, 예를 들어 외부교통권도 구금의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최근 형집행법에 신설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또한 그동안 행형의 시선에 포착되지 않았던 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본다면 같은 맥락이겠음. 구금의 부작용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 일반에도 해당함. 한편, 다양한 사회내 처우(가석방,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는 교정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아니지만 자유박탈형이 가지는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라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수형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를 가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부가되는 고통으로 구금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과밀수용 문제, 혹서기 냉방과 혹한기 난방 문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 금치 징벌(독방 감금)과 보호장비²⁾의 남용, 수용실에 24시간 조명을

2) 보호장비는 교도관이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켜두는 관행. 이들은 예상치 못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 교정시설의 예산과 인력,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구금 외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구금의 부작용으로 이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가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복역관계(재소관계)는 위와 같은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행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국가와 수형자간에 성립하는 특수한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³⁾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임.

○ 구금의 부작용은 소수자인 수용자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 구금시설도 사회의 일부이므로, 사회적 혐오와 멸시의 대상인 사람일수록 공동생활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의 혐오와 멸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교정시설은 24시간 생활을 강제로 같이 해야 하므로 이러한 혐오와 멸시를 회피할 길도 없음. 이는 구금 자체가 주는 고통 외 부가되는 다른 고통의 전형적인 사례이겠음.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등의 경우에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음. 보호장비의 종류로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이 있음 (형집행법 제97조, 제98조)

3)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3) 개별처우의 원칙

○ 재사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개별처우의 원칙). 이와 관련하여 형집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처우로는 △수형자에 대한 주기적인 분류심사(제59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제56조) △처우등급(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의 구분(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76조) 등이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별처우가 단순히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른 처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비등급에 따른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경비시설의 구분(제57조)과 교정성적(제5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처우등급의 부여(시행령 제84조)라는 방식으로 처우에 차등을 두어 수형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교정성적은 겉보기에는 점수제로 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성적의 판단 등 운용 과정이 사실상 소측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특정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함. 근본적으로 현재 개별처우의 원칙은 교정시설의 부족한 처우 역량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문제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 한편,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형집행법은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 노인수용자에 대해서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처우, 장애인수용자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처우, 외국인수용자에 대해서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한 처우,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나이·적성 등을 고려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또한 개별 처우 원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소수자·약자의 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차별금지 원칙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각론이 부족한 상황임.

○ 대표적으로, 이번 토론회의 계기가 된 성소수자·HIV감염인과 관련해서는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법률 수준의 규정도 갖추고 있지 못함. HIV감염인에 관해서는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서 신입자 건강진단(제3조 제2항)과 분리 수용(제11조 제2항) 정도를,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 독거수용(제39조) 정도를 규정하고 있음. 넬슨만델라규칙 제2조 제2항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개별 피구금자의 필요, 특히 교도소 시설 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 소수자인 수용자에 대한 반차별조치가 소수성에 따른 특수한 필요를 보장하는, 즉 최저선을 보장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가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⁴⁾을 권고한 것은 처우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음. 이것은 교정시설의 공식적인 운영과정에서 병력의 노출을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권고지만, 감옥공동체 안에서 병력이 다른 수용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현재 교정시설의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임. 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계획이 병력 등 개인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재점검, 병력 관련 거실 앞 표식 부착 주의, 손톱깎이 등 공동사용 물품에 병명 적시 유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도 이 때문은 아닐지?

○ 예를 들어 병력 노출의 한 경로였던 청소도우미(소지)와 관련하여, 교도관이 청소도우미에게 수용자의 병력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꼭 필요하지만, 수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수용업무를 청소도우미에게 맡기는 교정행정은 상수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임. 청소도우미는 청소 업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의 접수·배부 등 일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수용자 관련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병력이 병력에 그치지 않고 교정시설에서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처우를 청소도우미와 함께 행하면서도 병력의 노출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현재 시스템을 그

4) 국가인권위원회 2019. 6. 5.자 19진정0116200 결정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대로 긍정하고서는 찾기 어렵다고 봄. 부족한 교정 인력을 수형자의 노역을 통해 해결하는 청소도우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병력의 노출이 차별로 이어지는 이유가 병력에 대한 혐오 때문으로 본다면, 위 사건에서도 수용자들 사이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방법을 법무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음.⁵⁾

4) 보안 후순위의 원칙

○ 행형은 공동생활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보안)는 행형의 전제가 되는 것임. 그러나 보안 자체가 행형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시설의 보안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임. 그러나 재사회화를 행형의 목적으로 하는 이상,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형의 목적 자체를 해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작업의 종류 가운데 교정시설 바깥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통근작업의 경우, 다른 작업에 비해 도주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음. 보안은 행형의 목적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봐야 할 것임.

○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위해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신체를 규제(이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음)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재사회화 관련 처우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보안의 위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려는 태도가 필요함(보안 후순위의 원칙). 예를 들어 수용실 CCTV 감시, 사적 물품 소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보안을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수용자의 일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처우임. 같은 맥락에서 징벌과 보호장비와 같은 보안을 위한 강제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임. 보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보호장비인데, 형집행법 제99조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5) 에이즈와 다른데... HIV 보건자 입감에 난리난 서울구치소, <조선일보> 2019. 8. 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175.html>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임. 물론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보호장비의 사용 여부가 일차적으로 교도관의 판단에 달려 있어,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장기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징벌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보안을 위한 조치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처우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현재 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보호실·진정실에 감금할 수 있는데, 자해의 이유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처우를 개선하거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의료처우를 제공하여 자해 우려를 줄이는 것이 보안조치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임.

○ 최근 사건에서도 소측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고 운동을 별도로 실시하며 칸막이 등 계호시설을 보강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따랐음.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남성수용동에 수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강간 등의 2차적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음. 수용실이 모여 이루어진 수용동은 실외운동 등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기본 단위이므로 FTM 수용자를 여성수용동에 수용하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기회가 없게 되어 사실상 형기 내내 금치 징벌을 받는 셈이 됨. 그러나 국가인권위도 “여성의 성기를 가진 FTM 수용자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남성수용동에 배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 과정에 진정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필요한 처우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정도로 판단했음.⁶⁾

○ 이처럼 성별화된 공간인 교정시설에서 재사회화 목적보다 보안이라는 과제를 우선시하면 트랜스젠더와 같이 기존 시설이 예정하지 않았던 성별정체성을 가진 수용자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음. 성폭력 등 2차적 범죄는 교정시설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그 위험이 없다할 수 없음. 그러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 수용자를 통제하는 교도관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그 위험을 지나치게 과

6)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0.자 17진정0726700 결정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임.

○ 현재 교정시설 환경을 상수로 두고서는 재사회화라는 행형 목적과 보안이라는 과제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함. 아래에서는 교정시설 환경 변화 과제의 하나로 독거수용 원칙의 관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함.

2. ‘늘 중장기 과제’인 독거수용 원칙의 관철

1)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 예외로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독거수용은 2가지로 나뉘는데,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이 그것임.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 계호상 독거수용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 계호상 독거수용의 대표적인 경우가 금치 징벌임. 수용자가 규칙을 위반하여 금치 징벌을 부과 받을 경우 징벌거실에 수용되는데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30일 이내의 전화 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30일 이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내의 접견 제한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등의 처우 제한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음. 그 외에도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함(시행령 제123조).

2) 국제인권기준 : 주간 혼거, 야간 독거

○ 국제인권기준은 ‘주간 혼거, 야간 독거’로 요약할 수 있음. 넬슨만델라규칙 제12조 제1항은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넬슨만델라규칙 제113조는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의 야간 독거수용 원칙을 강화하고 있음.

3) 현실과 대안

○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의 비율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일부 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과거 통계가 공개되어 있는 정도임.⁷⁾ 독거수용 원칙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혼거수용되고 있음.

7) 최영신·이승호·윤옥경·금융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353쪽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표 II-5-1〉 구치소의 거실 유형 분포(2014년 10월)

단위: 거실수(%)

교정시설*	거실수 합 계	독거실	혼거실	병실		치료 거실
				독거실	혼거실	
서울(구)	974(100.0)	368(37.8)	528(54.2)	12(1.2)	6(0.6)	60(6.2)
인천(구)	372(100.0)	162(43.5)	187(50.3)	4(1.1)	10(2.7)	9(2.4)
수원(구)	576(100.0)	253(43.9)	266(46.2)	-	9(1.6)	48(8.3)
부산(구)	551(100.0)	150(27.2)	346(62.8)	4(0.7)	16(2.9)	35(6.4)
서울남부(구)	772(100.0)	391(50.6)	339(43.9)	14(1.8)	8(1.0)	20(2.6)
성동(구)	394(100.0)	52(13.2)	297(75.4)	-	19(4.8)	26(6.6)
대구(구)	259(100.0)	76(29.3)	169(65.3)	-	14(5.4)	-
울산(구)	88(100.0)	24(27.3)	52(59.1)	4(4.5)	5(5.7)	3(3.4)
통영(구)	119(100.0)	36(30.3)	72(60.5)	2(1.7)	4(3.4)	5(4.2)
밀양(구)	193(100.0)	38(19.7)	138(71.5)	6(3.1)	5(2.6)	6(3.1)
충주(구)	137(100.0)	55(40.1)	73(53.3)	2(1.5)	6(4.4)	1(0.7)

*수용인원이 400명 이하

〈표 II-5-2〉 구치소의 거실 유형별 수용 인원의 분포(2014년 10월)

단위: 명(%)

교정시설*	수용인원 합계	독거실	혼거실	병실		치료 거실
				독거실	혼거실	
서울(구)	3,091(100.0)	262(8.5)	2,581(83.5)	11(0.4)	11(0.4)	226(7.3)
인천(구)	2,222(100.0)	169(7.6)	1,943(87.4)	4(0.2)	54(2.4)	52(2.3)
수원(구)	2,493(100.0)	348(14.0)	1,740(69.8)	-	21(0.8)	384(15.4)
부산(구)	2,127(100.0)	77(3.6)	1,841(86.6)	4(0.2)	72(3.4)	133(6.3)
서울남부(구)	1,953(100.0)	231(11.8)	1,576(80.7)	6(0.3)	23(1.2)	117(6.0)
성동(구)	1,726(100.0)	28(1.6)	1,524(88.3)	-	70(4.1)	104(6.0)
대구(구)	1,233(100.0)	61(4.9)	1,084(87.9)	-	88(7.1)	-
울산(구)	533(100.0)	18(3.4)	463(86.9)	4(0.8)	25(4.7)	23(4.3)
통영(구)	471(100.0)	25(5.3)	393(83.4)	2(0.4)	23(4.9)	28(5.9)
밀양(구)	427(100.0)	28(6.6)	369(86.4)	-	4(0.9)	26(6.1)
충주(구)	428(100.0)	54(12.6)	345(80.6)	2(0.5)	25(5.8)	2(0.5)

*: 수용인원이 400명 이하

○ 사정이 이렇다보니 혼거수용을 거부하여 징벌을 감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형집행법은 징벌 대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제107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의 규율 가운데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제17호)가 있음. 징벌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른 규율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던 반해 이 규정은 징벌대상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징벌 남용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징벌사유별 현황⁸⁾

구 분	계	형벌규정 저촉	작업, 교육 거부	금지 물품 반입, 은닉 등	직무, 일과 방해	소란, 생활 방해	지시 불이행	기 타
2008년	16,085	4,493	1,014	832	279	1,049	7,397	1,021
2009년	17,016	4,515	1,016	514	444	1,752	7,273	1,502
2010년	15,963	4,705	928	335	553	1,847	6,116	1,479
2011년	14,682	4,655	766	280	581	1,900	5,038	1,462
2012년	13,702	4,406	731	226	496	1,872	4,537	1,434
2013년 8월	9,896	3,247	569	175	380	1,339	3,090	1,096

○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이는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할지 아니면 혼거수용을 할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된 교도소장의 재량에 해당해 피고 소속의 교도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⁹⁾

○ 독거수용 여부가 소족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의혹도 계속되고 있음. 2017년 구속된 박근혜씨에게는 3.2평

8)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징벌사유별 현황은 법무부가 일반에 비공개하고 있어 과거 자료를 인용했으나, 관련 법제도와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어 현재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함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3142 판결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12.01m²) 규모의 독방이 배정되었는데, 박씨가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씨를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함.¹⁰⁾ 2018년에는 1000만원이면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음.¹¹⁾

○ 무엇보다도 교정시설 건축 당시부터 혼거실 위주로 건축되고 있어 독거수용 원칙 관철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신축 교정시설도 혼거실 위주로 지어지고 있는데, 한번 건축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되므로 그 기간에는 독거수용 원칙을 관철하기가 어려워짐.¹²⁾ 독거수용 원칙 관철이 ‘늘 중장기 과제’인 이유가 이것임. 무엇보다도 현재 신축·증축되는 시설부터 독거실 위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간혼거·야간독거의 원칙 관철을 위해서는 주간에 공동으로 생활할 공간을 교정시설 내에 만들어야 할 것임. 이런 공간으로는 식당, 도서관, 휴게실 등을 상상할 수 있겠음.

○ 대부분의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원함.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공동생활 과정에서 갖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임. 독거수용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용 방식이기도 함. 이른바 ‘교정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 보안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도 유용할 것임. 한편, 수용자들이 원하는 독거수용은 이번 토론회의 계기가 된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독거수용과는 다름. 형집행법의 ‘계호상 독거수용’이 아니라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작업 등 처우를 함께 하고 야간에는 각자의 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방식. 프라이버시도 공동생활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독거수용은 징벌을 의미하기 때문. 재사회화를 위한

10) 서울구치소, 박근혜 ‘독방 수리’ 요구에 교도관 당직실 내뱉, <연합뉴스> 2017. 4. 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4038000004>>

11) “브로커 통해 거래되는 교도소 독방”, <KBS> 2018. 11. 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2210>>

12) 다만,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교정시설 설계표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주간 휴게실(Dayroom)’을 포함한 3세대 교정시설을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주간 휴게실은 수용자들이 식사는 물론 낮 시간에 공동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삼각형 모양의 교정시설 한가운데에 자리하는 것(교정시설 과밀수용·인권침해 해결 나선다, <서울경제> 2017. 11. 21., <<https://www.sedaily.com/NewsView/10NO08PT5H>>). 설계표준 또한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개정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유사성의 원칙을 감안하면, 교정시설 외부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보장해야 할 것임.

○ 한편, 독거수용이 아니라 혼거수용을 원하는 수용자도 있을 수 있음. 이를 위해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중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임. 혼거수용을 선택할 경우 함께 수용되는 다른 수용자를 선택(결국 상호 선택)할 기회 또한 부여해야 할 것임.

토 론 2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토 론 3

손문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국제인권기준에서 보면 수용자에게 HIV 강제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입수용자 입소 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3항 “신입자는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2015년 신설된 이유가 검진을 거부하는 수용자가 있어 HIV감염인을 다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전에는 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소장에 게만 부여했는데 검진을 받을 의무를 신입수용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검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HIV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에이즈 예방이나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내 감염인을 색출하고 격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교정시설 HIV/AIDS 감염인 현황 자료(2017)를 보면 강제검진하고 격리수용하는 것 외에 HIV감염인의 건강관리 및 수용생활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IV는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졌고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IV 유병률이 매우 낮고 재소자의 HIV 유병률이 높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에이즈 검사는 보건학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신입수용자에 대한 후천성면역 결핍증 강제검사는 폐기되고 자발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사후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교정시설 내 HIV 감염과 에이즈에 관한 WHO 가이드라인 (WHO guidelines on HIV infection and AIDS in prisons, 1999)(이하 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HIV강제검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효과가 없어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 자발적 HIV검사는 충분한 사전, 사후상담과 함께 고지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수행 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검사결과는 의료적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 의료인에 의해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토 론 4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구금시설 내 성소수자 HIV감염인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HIV/AIDS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 및 예방법 개발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HIV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접촉이나, 칫솔, 수건 등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는 여전히 만연하며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낙인이 뿌리깊다.

진정에서와 같이 손톱깎이를 구분한다거나 운동장에 선을 긋는 등 감염인을 격리하는 행위는 HIV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 증진에 힘써야할 교도관이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에 대한 제고가 없었다는 것, ‘특이환자’라는 표식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국가 공무원들이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HIV감염인을 구분, 격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릇된 공포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해를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원들 역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HIV 감염인 수용자에 관해 전 교정기관에 관련 지침 마련,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권고는 지극히 마땅하다 할 것이다.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노력해야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갈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 한 인간을 존엄하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HIV감염인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이해 없이 존엄하게 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성별표현이 동일하지 않고 모든 성소수자들이 독거 또는 혼거수용을 바라지도 않는다. 개별적 존재로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이해되고 살피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는 기관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러한 쪽으로 향해 갈 때 더욱 단단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혐오는 날로 기승을 더하고 미약하게나마 있던 인권의 최전선마저 침범당하고 있다. HIV감염인들이 낙인에 의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이분법에 자아를 감금당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격리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존엄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과연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그 자체로 형벌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기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구금시설은 사회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처한 불안한 위치를 고려할 때 통제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구금시설에서의 처우는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진정을 계기삼아 법무부와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구금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 HIV감염인의 인권 상황과 개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때라야 구금시설 내 성소수자 HIV감염인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해 제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에 앞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 숨어 방조한 채 분열과 폭력을 심화시키는 지금의 현실이 국가의 책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억압이 인권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성소수자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시작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종합토론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구금시설과 성소수자, 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19. 12. 18.

발행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